입찰참가자 주요 안내사항

본 공사는 예정가격 2천만원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대상 공사는 아니나, 공사(公社)자체 기준에 따라 **본 공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예정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 622,000원**
○ **산출방식 : 2천만원 × 3.11%**

이에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시는 업체에서는 견적서 내에 상기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또는 금액 오기입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감독부서에서 상기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며 이로 인해 낙찰금액 및 최종 낙찰업체가 변동되더라도 귀책사유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안전보건관리비는 확정금액이 아니며, **계약상대자의 사용실적 증빙에 따라 실적정산**합니다. 실적정산시 인정되는 사용기준은 **별첨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발주자 자체기준)**에 따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감독부서 담당자(과장 김동영, ☎064-766-3732)로 연락바랍니다.

[별첨]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기준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 도급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모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도급 사업장 내에서 장비 및 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등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감시자의 인건비
2. 각종 안전표지,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등 안전시설 및 해당 시설의 설치 비용 등(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을 위한 각종 안전진단 및 검사 등의 비용, 작업환경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의 비용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으로서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단, 제14호 제외) 중 각 호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의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